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필기 (상권) 핵심정리, 문제풀이 2.건물에너지 효율설계 · 평가
1차 정오표[2016.5.10.]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2-8페이지 핵심 4	<p>핵심 4 인증기관의 지정(규칙 제4조)</p>
2-39페이지 핵심 4	<p>핵심 4 인증기준 및 등급(기준 제4조)</p>
2-76페이지 예제문제 02번 ③번	<p>③ 실무교육 보안각서</p>
2-94페이지 예제문제 04번	<p>④ 도시가스 배관시설 중 냉·난방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p>
2-94페이지 핵심 4 ④	<p>④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와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2-101페이지 예제문제 01번 해설	<p>“기밀성 창”, “기밀성 문” 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m³/h·m² 미만)인 것을 말한다.</p>
2-108페이지 예제문제 06번 해설 ④	<p>④ 평균열관류율은 지붕, 바닥, 외벽 등의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각 부위의 열관류율 값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p>
2-119페이지 고시 제17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p>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률 적용방법(100분의 115의 범위 내)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 •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100분의 115의 범위 내)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120페이지 파란박스 · 완화기준 적용방법	<p>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 1등급 인증을 취득하여 12%의 완화비율 적용이 가능할 경우 :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용적률, 높이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예) 용적률 6%, 높이 6%</p>
2-167페이지 예제문제 02번	<p>콘크리트 두께 15cm, 내면 석고 플라스터1cm의 구조체에 들어오는 열량은 몇 W 인가? (단, 구조체의 열관류율은 3.2 W/m² K 이고, 외기온도는 36℃, 실내온도는 26℃, 벽의 면적은 35m² 이다.)</p>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빨간색 글씨-수정된 부분)																											
<p>2-205페이지</p> <p>예제문제 03번 해설</p>	<p>*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m²·K/W)</p> <table border="1" data-bbox="523 349 1441 685"> <thead> <tr> <th rowspan="2">건축물 부위</th> <th rowspan="2">열전달저항</th> <th rowspan="2">실내표면 열전달저항(R_i)</th> <th colspan="2">실외표면 열전달저항(R_o)</th> </tr> <tr> <th>외기에 간접 접하는 경우</th> <th>외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td> <td></td> <td>0.11 이하</td> <td>0.11 이하</td> <td>0.043 이하</td> </tr> <tr> <td>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td> <td></td> <td>0.086 이하</td> <td>0.15 이하</td> <td>0.043 이하</td> </tr> <tr> <td>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td> <td></td> <td>0.086 이하</td> <td>0.086이하</td> <td>0.043 이하</td> </tr> <tr> <td>공동주택의 층간바닥</td> <td></td> <td>0.086 이하</td> <td></td> <td></td> </tr> </tbody> </table>	건축물 부위	열전달저항	실내표면 열전달저항(R _i)	실외표면 열전달저항(R _o)		외기에 간접 접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		0.11 이하	0.11 이하	0.043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0.086 이하	0.15 이하	0.043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 이하	0.086이하	0.043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0.086 이하		
건축물 부위	열전달저항				실내표면 열전달저항(R _i)	실외표면 열전달저항(R _o)																						
		외기에 간접 접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		0.11 이하	0.11 이하	0.043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0.086 이하	0.15 이하	0.043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 이하	0.086이하	0.043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0.086 이하																										
<p>2-208페이지</p> <p>예제문제 03번 정답</p>	<p>답 : ②</p>																											
<p>2-215페이지</p> <p>예제문제 02번 해설</p>	<p>“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고효율 창호”가 아니라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219페이지</p> <p>- <표3> ex2)</p>	<p>0.73 - {(0.73-0.61)/0.2 * (0.385-0.2)} = 0.619</p>																											
<p>2-248페이지</p> <p>예제문제 02번</p>	<p>다음 설명 중 에너지성능지표 13번항목과 관련된 내용에서 공동주택의 지하1층 채광창 면적이 1800m² 일 때, 채광용 개구부 2m² 이상 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몇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가?</p>																											
<p>2-282페이지</p> <p>예제문제 01번 ③</p>	<p>③ 표준시방서 두께, 적용두께, 증가비율표기</p>																											
<p>2-286페이지</p> <p>예제문제 05번</p>	<p>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기계설비부문 관련 항목 중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의 단열재의 인정 두께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기준 대비 얼마 이상의 단열 두께로 하여야하는지 가장 적합한 것은?</p>																											
<p>2-307페이지</p> <p>핵심 1 전기설비부문의 의무사항 ④</p>	<p>④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p>																											
<p>2-316페이지</p> <p>핵심 5</p>	<p>④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p>																											